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2012.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입학(이하 입학이라 한다)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조직) 위원회는 스쿨별로 구성하며 스쿨원장을 포함하여 전공교수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스쿨원장이 되고 원장이 간사를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기본계획 심의
2.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
4.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전형유형, 전형자료, 자격기준, 전형일정, 모집인원의 배분 등
5. 대학입학 사정기준 제정
6. 기타 입학관리에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모집학년도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과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진행중인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해 심의된 것으로 본다.